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자영업)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취업하였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자영업자의 경우)

1.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영위 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신고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상이 시 부지급)
 - 1)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함
 - 2)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수영강사, 학원강사, 샵매니저, 퀵배송, 컴퓨터프로그래머, 개인택시, 개별용달, 기타 프리랜서 등)로 등록, 위촉된 경우도 12개월 이상 자유직업종사자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류예시) -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등록증, 주유영수증(12개월분), 주유카드 복사본
 - 자유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수당이체통장(12개월분)
 - 보험설계사의 경우: 위촉증명서,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12개월분)
 - 개인용달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2개월분)
2. 사업개시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어야 함
3. 실업급여 수급 당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계획서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자영업활동 내역서 제출)을 1회 이상 인정** 받았을 것(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제2항)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5.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위 지급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 날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필요서류 (서울관악고용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1.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위 지급대상 조건 1번 참조)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사업개시일~수급기간만료일) X 1/2

- 잔여급여일수 산시점: 사업개시일
※ 담당자에게 전화하셔도 조기수당이 처리 될 때까지는 금액은 알 수 없으며, 위 지급요건에 의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구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

- 방문접수(대리방문 가능), 등기우편접수, 인터넷접수(www.ei.go.kr), 팩스접수(02-6915-4100)
 - ※ 인터넷 접수 시 위 필요서류를 작성 후 스캔 하여 제출(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기재취업수당)
 - ※ 우편접수시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관악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앞 (우)152-847
- ☎ 02-3282-9369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상담 문의)

기타 유의 사항

1. 청구서의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처리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 약 20일 소요)
2.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청구에 <재실업신고>

공지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⑯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취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⑩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취직한 사업장과 ⑨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7. ⑭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8.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처리절차

